

의안번호	2202612
의 퇴 인	최보운 의원
회 답 일	2024. 8. 12.
추 계 번호	24C2606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장애영향평가, 국민인식조사, 장애인 욕구충족 및 권리실현에 관한 지표의 구축·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4억 800만원(연평균 12억 8,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장애영향평가 실시(안 제8조)	1,041	1,041	1,041	1,041	1,041	5,205	1,041
국민인식조사 수행(안 제40조제3항)	113	113	113	113	113	565	113
장애인 욕구충족 및 권리실현 지표 구축·관리(안 제51조)	30	27	27	27	27	138	28
장애인권리침해 예방의 날 (안 제75조)	100	100	100	100	100	500	100
추가재정소요	1,284	1,281	1,281	1,281	1,281	6,408	1,28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장애영향평가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정책 또는 예산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3조(평등권)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법률적 권한을 행사하고자 요구하는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14조(자기결정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5조(참정권)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수어통역·안내보조, 선거용 보조기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무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제3항) 의무규정 (제5항) 재량규정
5	안 제17조(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적절한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소득보장,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8조(일할 권리 및 직업선택권)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직장 내에서 장애인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19조(안전권)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20조(건강권)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 향상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2항) 의무규정 (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21조(재활을 받을 권리)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조기에 적절한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 고용, 교육, 체육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종합적인 훈련과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22조(주거권)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적절한 시책을 제공하여야 함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과 주택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23조(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권리)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장애서비스를 필요한만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제3항)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 및 각종 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24조(접근권)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자인의 연구, 개발, 확산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어 지원, 문자통역 지원, 점역 지원, 화면해설 지원, 읽기 쉬운 자료 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25조(이동권)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 및 시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기기 지원 및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편의시설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 안내 보조, 전기통신, 방송시설 등 인적·물적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14	안 제26조(교육권)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15	안 제27조(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16	안 제28조(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지원, 운동경기 지원,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개발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3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및 활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17	안 제29조(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 및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놀이기구·온라인프로그램·기타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이용, 접근 가능하도록 수련시설, 체험시설, 자연학습시설, 휴양시설, 여가교육시설, 여가학습장 등을 개선하거나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30조(사법 접근권)	(제2항) 국가는 장애인이 사법 조사, 증인 참여를 비롯하여 필요한 사법적 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과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3항) 국가는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 공무원을 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9	안 제31조(장애아동)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 건강, 문화, 여가, 스포츠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20	안 제32조(장애노인)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노인의 권리 증진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노인이 소득, 돌봄, 건강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받고, 문화, 여가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의무규정
21	안 제33조(장애여성)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모성보호와 보육 여건 향상, 건강유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및 고용 안정 등을 위하여, 학습, 직업교육, 장애 여성에 적합한 노동환경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등으로부터 장애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22	안 제34조(중증·중복·소수유형 장애인)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두 종류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욕구에 적합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생빈도가 낮은 소수 유형의 장애인이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3	안 제35조(장애인 가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4	안 제36조(서비스제공 받을 권리)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3항)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운영하되, 수립 과정에서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의견,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서비스결정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의무규정
25	안 제40조(사회적 인식 개선)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장애인 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장애인 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인식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6	안 제41조(장애인권리의 교육·홍보 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고취하며,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는데 필요한 교육, 공익광고 등 홍보 및 그 밖의 인식제고 조치를 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능력과 기여에 대한 장애인 자신과 사회적 인식 모두를 증진하는 계획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장애인 인식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야 하고, 제1항의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 강사 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제3항)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를 포함하여 유치원과정을 비롯한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 존중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함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과 홍보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의무규정
27	안 제42조(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장애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디지털 기술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관련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의무규정
28	안 제44조(장애인정책 지역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정책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9	안 제48조(전달체계)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의 효과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의무규정
30	안 제51조(통계 및 지표의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부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생애주기 및 장애 유형 등에 따른 욕구의 충족, 장애인의 권리실현 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매년 구축·관리하여야 함	의무규정
31	안 제58조(긴급전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32	안 제59조(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현행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장애인학대 예방 ※ 안 제61조, 제65조, 제68조, 제69조 등에 제정안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명시	의무규정
33	안 제63조(피해장애인 쉼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과 성인을 위한 장애인 쉼터(이하 “장애인쉼터”라 한다)를 각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현행 피해장애인 쉼터의 역할: 학대피해장애인 보호	의무규정
34	안 제66조(장애인 권리 침해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침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권리침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5	안 제70조(장애인권리 침해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리침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1. 장애인권리침해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권리침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실태 조사 3. 장애인권리침해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장애인권리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권리침해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권리침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의무규정
36	안 제75조(장애인권리 침해 예방의 날)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권리침해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권리침해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권리 침해 예방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리침해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재량규정
37	안 제76조(새로운 제도의 개발)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제1항) 의무규정 (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장애영향평가의 실시)	×	○ 여성가족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13조(평등권)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4조(자기결정권)	×	
4	안 제15조(참정권)	×	
5	안 제17조(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	
6	안 제18조(일할 권리 및 직업선택권)	×	
7	안 제19조(안전권)	×	
8	안 제20조(건강권)	×	
9	안 제21조(재활을 받을 권리)	×	
10	안 제22조(주거권)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1	안 제23조(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권리)	×	
12	안 제24조(접근권)	×	
13	안 제25조(이동권)	×	
14	안 제26조(교육권)	×	
15	안 제27조(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	
16	안 제28조(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	
17	안 제29조(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	
18	안 제30조(사법 접근권)	×	
19	안 제31조(장애아동)	×	
20	안 제32조(장애노인)	×	
21	안 제33조(장애여성)	×	
22	안 제34조(중증·중복·소수유형 장애인)	×	
23	안 제35조(장애인 가족지원)	×	
24	안 제36조(서비스제공 받을 권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단, 제3항은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5	안 제40조(사회적 인식개선)	△	
26	안 제41조(장애인권리의 교육·홍보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7	안 제42조(디지털 기술의 활용)	×	
28	안 제44조(장애인정책지역계획)	×	
29	안 제48조(전달체계)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0	안 제51조(통계 및 지표의 구축)	○	○ 여성가족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31	안 제58조(긴급전화)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2	안 제59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33	안 제63조(피해장애인 쉼터)	×	
34	안 제66조(장애인 권리침해정보시스템)	×	
35	안 제70조(장애인권리침해의 예방과 방지 의무)	×	
36	안 제75조(장애인권리침해 예방의 날)	○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37	안 제76조(새로운 제도의 개발)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3조~제30조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편의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고, 제31조~제35조는 지원 대상을 아동·노인·여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 마련 및 지원 노력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조항 모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안 제13조~제29조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규정을 유지 또는 확대한 것으로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 제13조~제29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 제정안과 현행 「장애인복지법」 유사 조항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현행 주요 사업(2024년 예산액)
안 제13조(평등권)	제8조(차별금지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 확산(8.01억원) 장애인차별금지연구(5.15억원)
안 제15조(참정권)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회적 약자 투표편의 제공(26.58억원) 장애이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 등 지원(0.61억원)
안 제17조(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보건복지부] 장애수당(기초)(1,506.33억원) 장애수당(차상위 등)(684.18억원) 장애인연금(8,931.57억원)
안 제18조(일할 권리 및 직업선택권)	제21조(직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2,226.95억원)
안 제19조(안전권)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4조(안전대책 강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31.72억원)
안 제20조(건강권)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358.68억원)
안 제21조(재활을 받을 권리)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제19조(사회적응 훈련)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지원(50.01억원)
안 제22조(주거권), 안 제23조(지역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권리)	제27조(주택 보급)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1.92억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현행 주요 사업(2024년 예산액)
안 제24조(접근권)	제22조(정보에의 접근)	[교육부]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45.5억원)
안 제25조(이동권)	제23조(편의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증진(9.89억원)
안 제26조(교육권)	제20조(교육)	[교육부] 장애학생교육지원(167.74억원)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202.48억원)
안 제27조(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문화체육관광부] 함께누리 지원(291.07억원)
안 제28조(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단체 육성지원(375.94억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285.75억원)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444.87억원)
안 제29조(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소의계층 관광환경 개선(63.91억원) 무장애 관광동시 조성(25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 제31조~제35조에서 규정한 대상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3] 세부 대상별 장애인 지원 사업 현황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주요 사업(2024년 예산액)
안 제31조(장애아동)	장애아동가족지원(1,940.47억원)
안 제32조(장애노인)	장애인연금(8,931.57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장애인활동지원 등을 통한 돌봄 지원
안 제33조(장애여성)	여성장애인지원사업(25.44억원)
안 제34조(중증·중복·소수유형 장애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94.32억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199.11억원)
안 제35조(장애인 가족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1,940.47억원)

자료: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를 바탕으로 재작성

- 안 제3조는 “장애인”의 범위를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정의한 범위보다 확대하고 있어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추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될 사람의 수와 지원의 종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정의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3조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

□ 이하의 조항에 관하여서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

- (안 제15조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은 지원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음
- (안 제20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할 비용의 대상 및 비용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3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의견,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서비스결정 및 전달체계를 구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추가 인력 규모, 서비스결정 및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가로 추진할 사업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40조제2항·제4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식제고 조치를 실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인식개선 계획을 수행할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정규교육과정 및 인권교육·홍보에 장애인 권리 존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및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4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장애인의 디지털 교육·훈련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장애 관련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적극 노력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44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인정책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당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립 방식과 포함할 계획의 범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
- (안 제4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의 효과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며,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 시행에 따라 추가로 마련된 전달체계의 구조와 소요 재정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
- (안 제5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 수시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신고 전화(1644-8295)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기존 신고 전화의 개편 또는 신규 전화 도입 여부 등을 추정하기 곤란
- (안 제59조·제63조) 현행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장애인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영역을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과 권리침해피해장애인 보호로 확대·변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확대될 기관의 규모 및 사업 내용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66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권리침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개편 또는 신규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을 추정하기 곤란

- (안 제7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권리침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연구·교육·실태 조사 등을 수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추가로 실시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7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적극 개발·육성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추진할 사업을 알 수 없음
-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안 제8조·제40조제3항·제51조·제75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장애영향평가 실시(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 포함)이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비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장애영향평가 실시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여성가족부의 유관 사례의 사업 추진 구조와 지원 단가를 적용하되 추계기간 해당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영향평가 자문 업무를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위탁하고 있음
 - 2024년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중앙·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발굴 및 심층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5억 9,700만원(전년동)이고,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과제관리 및 이행점검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4억 4,400만원(전년동)

- 안 제36조제3항은 장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실제 장애영향평가의 추진 체계 및 평가 대상 사업의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추계결과,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2억 500만원(연평균 10억 4,100만원)으로 추계

[표 4] 장애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장애영향평가 실시(안 제8조)	1,041	1,041	1,041	1,041	1,041	5,205	1,0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장애 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수행(안 제40조제3항)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장애 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인식조사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보건복지부는 2020~2022년 사회보장 인식조사 연구를 수행
 - 각 연구에 소요된 재정은 2020년 9,800만원, 2021년 9,030만원, 2022년 1억 5천만원 등
- 매년 국민인식조사 수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단가는 보건복지부의 2020~2022년 사회보장 인식조사 연구 수행비의 평균값(1억 1,300만원)을 적용하되, 추계기간 해당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매년 장애 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억 6,500만원(연평균 1억 1,300만원)으로 추계

[표 5] 장애 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수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국민인식조사 수행(안 제40조제3항)	113	113	113	113	113	565	1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장애인 욕구충족 및 권리실현 지표 구축·관리(안 제51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욕구충족 및 권리실현 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매년 구축·관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계기간 중 첫 해에 관련 지표를 개발한 후 둘째 해부터 해당 지표에 대한 통계 결과를 조사·공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가재정소요는 여성가족부의 국가 성평등지수 개발 및 조사·공표를 위한 연구용역비 지출 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 여성가족부 사례의 단가를 적용하되, 해당 단가가 추계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여성가족부는 2019년 ‘국가 성평등 지수 개편 및 활용 방안 연구’를 위해 약 3천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출
 - 또한, 여성가족부는 매년 국가성평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21~2023년 보고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2,700만원으로 유지됨¹⁾
- 추계결과, 장애인의 욕구충족 및 권리실현 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해당 지표에 대한 수준을 조사·공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억 3,800만원(연평균 2,800만원)으로 추계

1) 국가성평등보고서의 연구용역 계약금액은 2021년 2,681만 8,180원, 2022년 2,690만 9,090원, 2023년 2,690만 9,090원이었고, 지역성평등보고서의 연구용역 계약금액은 2021년 3,690만 9,090원, 2022년 3,581만 8,180원, 2023년 3,590만 9,090원으로 소액의 차이가 있었으나 십만원 단위 어렵값 수준에서 비용이 유지되었으므로, 해당 수준에서 단가가 유지된 것으로 가정

[표 6] 장애인 욕구충족 및 권리실현 지표 구축·관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장애인 욕구충족 및 권리실현 지표 개발(A)	30	-	-	-	-	-	-
장애인 욕구충족 및 권리실현 지표 수준 조사·공표(B)	-	27	27	27	27	-	-
추가재정소요 합계(A + B)	30	27	27	27	27	138	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장애인권리침해 예방의 날 행사(안 제75조)

□ 제정안에 따라 장애인권리침해 예방의 날을 정하는 경우, 국가 등의 행사 개최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학대예방의날 행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사비 단가를 참고하여 추계

○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날로,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에 홍보위탁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의날 행사를 수행하고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023년 아동학대예방의날 행사에 소요한 비용은 약 8,300만원이며, 2024년에는 약 9,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본 추계서는 아동학대예방의날 행사비를 참고하여, 매년 장애인권리침해 예방의 날 행사에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홍보·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추계결과, 장애인권리침해 예방의 날을 정하여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원(연평균 1억원)으로 추계됨

[표 7] 장애인권리침해 예방의 날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장애인권리침해 예방의 날(안 제75조)	100	100	100	100	100	500	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